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0회 충청북도의회
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3. 7. 13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3년 7월 4일
- 회부일자: 2023년 7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창의적 사고력 개발 등 교육적 효과 향상에 필수요소인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한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, 이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에 대해 지도,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. (안 제6조의2)
- 제명과 조문에 포함된 용어가 일치되도록 수정 (안 제5조, 제11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8조제3항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독서문화진흥법」¹⁾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 독서진흥의 교육적 효과인 읽기, 쓰기, 말하기 등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충청북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, 이에 따라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,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 개정 목적이 있음.
- 다양한 가치관의 혼재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깊이 있게 사고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미국 하버드대²⁾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강조하고 있음.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* 「2015 개정 교육과정」(교육부 고시 제 2015-74호)을 비롯해 「제3차 학교도서관진흥 기본계획(2019~2023)」(교육부, 2019. 3월), 「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(2019~2023)」(문화체육관광부, 2019. 4월),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 (2-1-1. 전인적 인성교육 운영)에 따라 ‘2023. 독서·인문소양교육 기본 계획’에 교육청 수준의 학교 독서 활동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.

*

총론(교육청 수준의 지원) :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인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.

-
- 1) 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2) 하버드대는 1872년부터 신입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50년 가까이 수업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‘논증적 글쓰기’라는 과목명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: [에듀프레스 / 2021.4.16.]

- 특히, 지난해 확정된 ‘2022년 개정 교육과정’에서는 고등학교 국어과에 ‘자기주도성, 창의력 향상’ 강화에 중점을 두고 ‘독서와 작문’ ‘독서토론과 글쓰기’ 등 과목을 신설할 계획임.

〈 2022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목 구성 〉

교과(군)	공통 과목	선택 과목		
		일반 선택	진로 선택	융합 선택
국어	공통국어1 공통국어2	화법과 언어, 독서와 작문, 문학	주제 탐구 독서, 문학과 영상, 직무 의사소통	독서 토론과 글쓰기, 매체 의사소통, 언어생활 탐구

- 이에 따라,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 독서활동과 연계한 언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글쓰기와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에서 신설한 **안 제6조의2(글쓰기 등) 제1항**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,
- **제2항**에서는 학교장이 각 학교에서 독서교육과 연계한 글쓰기 및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특히, 학교 교육과정 중 이뤄지는 토론교육의 활성화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‘주입식 교육’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

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역동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게 됨. 이를 통해,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,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, 공감 능력을 제고하는 등 언어 능력 향상과 함께 다양하고 바람직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.

- 또한,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독서토론 프로그램으로 ‘2023. 독서·인문소양교육 기본계획’안에 포함하여 <충북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한마당>¹⁾을 운영하고 있으며, 해당 조문 신설을 통해 각 학교에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을 지도,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이 밖에 안 제5조(독서교육 전담부서)에서는 조문 내에서 ‘전담조직을’로 표현된 부분을 제명과 동일하게 ‘전담부서를’로 수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조치)는 기존 조례에서 제명에는 ‘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’로 표현한 반면, 조문에는 ‘행·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’로 사용하고 있어, 제명과 조문 내에서 ‘행정적·재정적 조치’로 표현되는 용어가 일치되도록 수정하였음.
- 안 제8조제3항에서는 ‘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’이라는 조문 내용 가운데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²⁾에 따라

1) (현재 충북교육도서관 운영)

▷ 대상: 독서토론 동아리 초등 25교 100명, 중고 34교 102명 총 202명

▷ 운영: 2023.11.3.~4.(초등부와 중고등부 2일간 나누어 실시)

▷ 방식: 주제도서 읽은 후 질문 만들고 함께 토론하기, 저자와 만남 후 소감 나누기

2)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(제10판, 2021.12.) 제3장(문장편 / 일본어 투 표현의 정비. p179)

일본어식 표현인 ‘~관하여’를 삭제해, ‘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’으로 정비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독서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특히, ‘2022년 개정 교육과정’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‘자기주도성, 창의력 향상’ 강화에 중점을 두고 ‘독서토론과 글쓰기’ 등의 과목을 신설하는 등 향후 학교에서의 글쓰기 및 토론 관련 교육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의 개정 방향 또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,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.

: ‘~에 관하여’는 일본어를 직역하면서 생긴 표현이다. 문맥에 따라 ‘~에 관하여’를 삭제하거나 ‘~는’, ‘~를’, ‘~에’ 등으로 바꾸어 쓴다.